

안산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

의안 번호	3082
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2017.11. .

제 출 자 : 안 산 시 장

□ 제정이유

- 「지방자치법」 제22조(조례)에서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정할 수 있으므로, 법상 위원회 설치 시 위원회 명칭·심의 사항·구성방법 등을 반드시 해당법령의 규정에 따라 정해야 함.
- 그런데 「안산시 안전관리 등 심의위원회 조례」는 법상 위원회로서 그 기능이 다른 “안산시 안전관리위원회”, “안산시 안전관리자문단”, “안산시 사전 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”를 통합하여 운영하고 그 기능을 정하고 있어 바람직하지 아니하므로 법상 위원회 별로 기능을 규정할 필요가 있음. (“법제처 의견” 기획법무과-5522(2017.4.18.)관련)
- 이에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의 기술적 자문을 위한 “안산시 안전관리자문단”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75조에 따라 별도로 규정하고자 그 근거 조례를 제정함.

□ 주요내용

- 자문단 기능(안 제2조)
 - 안전관리계획, 분야별 안전대책 수립 등에 관한 사항
 - 건축물·교량·터널 등 특정관리대상시설의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
 - 특정관리대상시설의 안전대책 및 등급조정 등에 관한 사항
 - 주민이 점검 의뢰한 시설에 대한 현장 안전점검 및 상담에 관한 사항
 - 안전점검의 날 등 관련 행사 시 상담 및 점검
 -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교육에 관한 사항
 - 그 밖에 시장이 자문 또는 점검이 필요하여 요청하는 사항 등
- 자문단 구성 (안 제3조)
 - 건축, 토목, 전기, 가스, 기계, 소방 등의 관련분야 대학교수
 - 건축, 토목, 전기, 가스, 기계, 소방 등의 관련분야 전문가(기술사, 건축사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)
 -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」 제4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관리전문

기관 소속의 전문가

- 안전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

제정조례안 : 불임1

관계법령 발췌서 : 불임2

-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75조

「안산시 소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6조, 제6조의2, 제15조,

「지방자치법」 제22조

관련사업계획서 : 해당 없음

예산수반사항 : 불임3

입법예고(결과) : 불임4

- 입법예고 : 2017. 8. 28. ~ 2017. 9. 18.(21일간)

- 예고결과 : 의견제출 2건(반영 2건)

기타 참고사항 : 불임5

- 안산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제정계획

< 불임 1 >

안산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75조에 따라 안산시 안전관리자 문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기능) 안산시안전관리자문단(이하 “자문단”이라 한다)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안산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의 자문 등에 응한다.

1. 안전관리계획, 분야별 안전대책 수립 등에 관한 사항
2. 건축물·교량·터널 등 특정관리대상시설의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
3. 특정관리대상시설의 안전대책 및 등급조정 등에 관한 사항
4. 주민이 점검 의뢰한 시설에 대한 현장 안전점검 및 상담에 관한 사항
5. 안전점검의 날 등 관련 행사 시 상담 및 점검
6.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교육에 관한 사항
7. 그 밖에 시장이 자문 또는 점검이 필요하여 요청하는 사항 등

제3조(구성) ① 자문단은 안산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민간전문가로 단장과 부단장 각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 다만, 시 관내 관련분야 전문가가 부족할 경우 인근 지방자치단체의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다.

1. 건축, 토목, 전기, 가스, 기계, 소방 등의 관련분야 대학교수
2. 건축, 토목, 전기, 가스, 기계, 소방 등의 관련분야 전문가(기술사, 건축사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)
3.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」 제4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관리전문기관 소속의 전문가
4. 안전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

제4조(임기)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,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전임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
제5조(위원의 위촉 해제 및 제척 등) 위원의 위촉 해제 및 제척 등에 관한 사항은 「안산시 소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6조 및 제6조의2를 준용한다.

제6조(단장과 부단장의 직무) ① 단장은 자문단을 대표하고, 자문단의 업무를 총괄한다.

②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고 단장이 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- 제7조(회의)** ① 단장은 자문단의 회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시장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자문단의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.
- ② 단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일시·장소 및 안전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 다만,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- ③ 자문단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- ④ 단장은 시장 또는 단장이 지명하는 관계공무원 등에게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진술 등을 하게 할 수 있다.

- 제8조(자문 및 안전점검)** ① 시장은 자문단에 자문 및 안전점검 등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서면으로 하여야 하고, 관계 서류·도면 및 그 밖의 참고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. 다만, 긴급하거나 현장 여건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관계 서류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.
-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긴급하거나 현장여건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구두로 자문 또는 안전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.
- ③ 시장은 시설물의 효율적인 안전점검을 위하여 시민, 학생, 자문단 위원 등으로 구성된 시민안전점검단을 운영할 수 있고, 시민안전점검단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- 제9조(협조요청)** ① 자문단은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의견 및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.
- ② 제1항에 따라 의견 및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.

- 제10조(안전점검 및 상담실시)** 자문단은 시장이 현장 안전점검 및 안전상담 등을 요청할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.

- 제11조(결과보고)** 자문단은 시장에게 제2조에 따른 자문 사항에 대한 자문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.

- 제12조(회의록)** ① 자문단의 간사는 회의의 내용을 회의록에 기록하여 단장에게 보고한 후 보존하여야 한다.
- ② 회의록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.
1. 회의 일시·장소
 2. 출석위원 및 관계인
 3. 안건명

4. 참석자 발언 요지
5. 심의경과 및 결과
6. 그 밖의 특기사항 등

제13조(간사와 서기) 자문단에는 그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각 1명을 두되, 간사는 재난관리업무담당과장이 되고, 서기는 해당업무팀장이 된다.

제14조(수당) 시장은 자문단회의에 참석하거나 자문, 안전점검 및 상담 등에 참여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「안산시 소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제15조(시행규칙)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자문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조례의 폐지) 안산시 안전관리 등 심의위원회 조례는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.

제3조(위원에 대한 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촉되었거나 임명된 자문단의 위원인 사람은 이 조례에 따라 자문단의 위원으로 위촉되거나 임명된 것으로 본다. 다만, 위원의 임기(연임 조항을 포함한다)는 종전 조례를 따른다.

제4조(단장과 부단장의 호선) 단장과 부단장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
소관 실·과		안전사회지원과
입 안 자	실·과장 직위·성명	안전사회지원과장 정 송 자
	담당·팀장 직위·성명	안전점검팀장 강 경 호
	담당자 성명·전화	이 륜 만 (행정 2726)

안산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3082
----------	------

제안년월일 : 2017. 12. 6.
제 안 자 : 기획행정위원장

□ 수정이유

- 안전관리자문단 위원의 연임에 제한을 두고자 함.

□ 주요골자

- 위원의 연임을 한차례만 할 수 있도록 함.(안 제4조)

안산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안 제4조 중 “연임할 수 있다”를 “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”로 한다.

신·구 조문 대비표

현 행	수 정 안
<p>제4조(임기)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, <u>연임할 수 있다.</u> 다만, 전임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 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</p>	<p>제4조(임기) -----, <u>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.</u> ----- -----</p>